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826
----------	-------

발의연월일 : 2026. 5. 6.

발 의 자 : 안상훈·안철수·임종득  
이양수·배준영·고동진  
이종욱·최은석·박덕흠  
박성훈·정연욱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전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급속한 고령화와 의학기술의 발달로 자연스러운 죽음이 점차 멀어짐에 따라 죽음의 질과 삶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삶의 마무리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사회적 기반이 미비하여 임종 과정에서 본인의 존엄성이 훼손될 뿐 아니라, 사후 유가족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의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 지원을 국가적 책무로 명시하고 고령사회 대책에 포함하여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명의료중단등의 결정,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의 방법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으로써, 죽음 과정에서의 자기 결정권을 제고하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도우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2절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삶의 마무리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같은 법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葬事)의 방법, 유산 상속 및 기부, 「민법」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지정, 유언장 및 생애보 작성 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함으로써 삶을 품위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19조의2(삶의 마무리 지원) 국</u>  <u>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호스</u>  <u>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u>  <u>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u>  <u>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u>  <u>중단등결정, 같은 법에 따른 호</u>  <u>스피스·완화의료, 「장기등 이</u>  <u>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u>  <u>등의 기증, 장례 및 장사(葬事)</u>  <u>의 방법, 유산 상속 및 기부,</u>  <u>「민법」에 따른 임의후견인의</u>  <u>지정, 유언장 및 생애보 작성</u>  <u>등 죽음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u>  <u>가 미리 결정하여 사전에 준비</u>  <u>함으로써 삶을 품위 있게 마무</u>  <u>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를</u>  <u>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u></p>